

【 9 】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9. 25.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1995. 12. 6. 법률 제4993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방단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림으로서 군 실정에 맞게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수방단 편성에 따른 임무와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2조, 제3조)

나. 수방단장의 임명과 임무 및 편성된 수방단의 각 반별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4조, 제5조)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주군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4호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종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주민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단장)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임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가.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동 구호물자 조달

제6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 군수는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양주군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제6조제2항)

第4節 自然災害對策

●自然災害對策法〔1995.12.6 法律第4993號全文改正〕

제1장 總 則

제1조 (目的) 이 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책임자”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단체등의 장(이하 “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에 관한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등을 말한다.
3. “방재시설”이라 함은 재해방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國家等의 實務) ①국가는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방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國民의 義務)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추 70)

第35編 水資源·土地·建設業 第2章 水資源·自然災害對策 自然災害對策法

책본부”는 “지방재해대책본부”로, “대통령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12조 (水防團의 設置·運營)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防災組織의 共助) 시·도본부장 및 시·군·구본부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경찰관서·소방관서·군부대등 관련기관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3 장 防災計劃

제14조 (防災基本計劃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民防衛基本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지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재기본계획을 民防衛基本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한 후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5조 (防災基本計劃事項) 방재기본계획에는 방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방재집행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 (防災執行計劃의 작성) ① 내무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방재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집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지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損害用 가동대책비용은 中央災害對策本部의 審議를 기친 경우에

· 災害로 인한 수 있도록 험(令 第3條).

다. 대급한 灾害가 발생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負擔額이 國庫지원기
관의 2.5倍를 초과한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계장능력에 따라
부구비용의 50미 앤트에서 80미 앤트를 國庫에서 부담하고, 灾害
地盤에 대하여는 國庫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험(令 第
5條 및 別表 2).

라. 灾害復舊費用의 算定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7條 내지
第10條).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기친 풍수해대책법시행령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통령 김영삼

1996년 6월 21일

국무총리 이수성

국무위원 김우석
내무부부장관

① 대통령령 제15,033호

풍수해대책법시행령개정령

풍수해대책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정기준)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정기준의

장과 "단체동의장"이라 칭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고유장

2. 지방산림관리청장

3. 세신청장

4. 지방환경관리청장

5.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특별시부시장을 포함한다)

6. 지방항공청장

7. 홍수통제소장

8. 지방철도청장

9. 지방해운항만청장

10. 한국주택은행장

11. 한국진력공사 사장

12.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13. 대한주택공사 사장

14.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5. 한국도로공사 사장

16. 한국방송공사 사장

17. 한국토지공사 사장

18.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19. 한국기증공사 사장

20.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21.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제13342호

中

四

1996. 6. 21. (금요일)

(5)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재체내체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재체내체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수방단의 설치기준) (1)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

(1) (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리·면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하며 이 경우 지역이 건강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리 또는 자연부락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통·리에 2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2이상의 통·리 또는 자연부락을 통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2) 수방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수방단의 조직기준) (1)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은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되며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수방단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방단에 본부 및 경계반·화구반·구호반 등을 둔다.

제14조(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 (1)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이상 다음 기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방단원의 비상소집

2. 재해사전대비 전침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요령

3. 방재의식의 개통

4.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2)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방단원을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방단원소집통지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하고,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방단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시기적 이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상소집 할 수 있다.

(3) 수방단원으로 편성된 민방위대원이 수방단으로 소집되는 경우에는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을 면제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방단원이 소집된 때는 예산의 빙위안에서 급식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수방단의 세부운영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방재기본계획의 작성 등) (1) 내무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시행 전년도 4월 말까지 방재기본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작성지침에 따라 6월 말까지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무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정된 방재기본계획을 9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96. 7

水防團 運營條例改正標準(案)

(市・郡・區)

内務部

수방단운영조례개정표준(안)

(시·군·구)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군·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제 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시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제23조제3항과 영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 (단장)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 가. 주민대피 유도
-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 나. 사망자·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 라. 담요등:구호물자 조달

제7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